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위탁수수료의 조정권고 절차 및 기준
2.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취소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김준현
	담당부서 (과)	유통정책과		직급	서기관
	국장	서 준 한		연락처	044-201-2221
	과장	박 은 영		이메일	serenejun@korea.kr

2026. 06. 18.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서준한 (서준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탁수수료의 조정권고 절차 및 기준														
	2.규제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														
	3.위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6.25.~2026.07.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 해당연도 영업이익률이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 단,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조정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5월말) ○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되, 권고 30일 이내 권고 사항 이행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실적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농식품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 필요 * 행정절차법 제48조~제50조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td><td>77개소('25년 기준) 68개소('25년 기준)</td></tr><tr><td>이해관계자</td><td>출하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중도매인 등</td><td>－</td></tr><tr><td>관련기관</td><td>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77개소('25년 기준) 68개소('25년 기준)	이해관계자	출하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중도매인 등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 등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77개소('25년 기준) 68개소('25년 기준)													
이해관계자	출하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중도매인 등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 등	－														
9.규제목표	○ 장관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를 통해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 → 출하자 위탁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 안정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 피규제기업: 요건에 맞는 권고 대상은 제한적이며, 경영자료 등은 이미 작성 관리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은 경미한 수준이고 위탁수수료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출														

		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수수료 운영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 권고 여부 검토 및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도매시장 관리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여 추가 비용은 제한적이고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유통비용 절감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39조의2(위탁 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u> <u>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출하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수수료 조정 권고를 받은 도매시
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
기준 및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 비
율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시행규칙에 마련할 필요

법령명	조문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 2. 27.> [전문개정 2011. 7. 21.]

□ 정부개입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수수료 조정 권고 근거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하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유통성과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위탁수수료 규정 현행 유지
	내용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현행 제도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마련
	내용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조정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도매시장법인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및 제도 이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위탁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여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규제대안1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고 생산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 수수료 수준과 경영성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	- 권고 수용 여부 검토 및 이행 계획 제출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의견 없음

③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 내용)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생산자 보호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법령명	조문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7.>

- (선택근거1) 위탁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기준 및 절차만을 규정하여 최소 규제 원칙에 부합
- (선택근거2)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확보
- (선택근거3) 생산자 권익 보호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공익 달성에 기여

3. 규제목표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생산자 권익 보호 및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
- 위탁수수료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 및 소비자 등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비례적 타당성 충족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와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공영도매시장의 핵심 유통주체로서 일정한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와의 이익 공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필요성이 인정
- 또한 본 규정은 위탁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절차를 준용한 권고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구체적인 조정 기준과 권고 비율은 시장 상황과 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따라서 본 규정은 생산자·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율하는 것으로서, 규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 조화 여부와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관련 산업의 사업자 수 또는 범위, 경쟁능력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는 과도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기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운영	
② 규제 방식	보고·제출 의무(권고 수용 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본 규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권고 수용 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적 규정임

		권고 대상 여부는 영업이익률 등 경영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규제 이행 비용 또한 기준에 작성·관리 중인 경영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 규제는 정량적 분석보다는 규제의 성격과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정성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④ 대상 업종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⑤ 예비분석내용		○ 권고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이미 영업실적, 재무제표 및 경영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어 권고 검토 및 이행계획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음 ○ 권고 수용 여부 검토 및 이행계획 작성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경영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수준임 ○ 규제 적용 여부는 기업 규모가 아닌 영업이익률 증가 수준 등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에 따른 규제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 권고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대상이 특정 업종(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규제 적용 여부가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 규모가 아닌 영업이익률 증가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규모별 차등화의 실익이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	-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피규제기업: 요건에 맞는 권고 대상은 제한적이며, 경영자료 등은 이미 작성 관리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은 경미한 수준이고 위탁수수료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출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수수료 운영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 권고 여부 검토 및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도매시장 관리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여 추가 비용은 제한적이고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유통비용 절감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위탁수수료를 직접 강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운영되므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규정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기준 및 권고 비율은 사전에 공개됨에 따라 규제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권고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절차를 준용하여 규제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규제 수용성이 높고 자발적인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여부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제출하는 경영실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조사나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
- 권고 기준이 영업이익률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도 고시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므로 집행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기존 행정 절차 체계 내에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기존의 관리·감독 체계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운영되므로 추가적인 인력 확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본 규제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6.5.4~5.14) 등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시행 이후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사례, 권고 이행 여부, 도매 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영실적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수수료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고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제4항	위탁수수료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을 고시로 구체화하여 규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26년 8월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과도한 이익 발생 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행정지도 방식으로 권고하여 규제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행정체계를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규제는 도매시장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로서 도입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	-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피규제기업: 요건에 맞는 권고 대상은 제한적이며, 경영자료 등은 이미 작성 관리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은 경미한 수준이고 위탁수수료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출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수수료 운영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 권고 여부 검토 및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도매시장 관리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여 추가 비용은 제한적이고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유통비용 절감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활동제목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검토 및 이행계획 제출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행정비용 발생 가능 - 다만 요건에 맞는 권고 대상은 제한적이며, 경영자료 등은 이미 작성 관리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은 경미한 수준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활동제목	수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편익항목	경영 신뢰도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위탁수수료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출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수수료 운영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권고 기준 운영 및 관리
편익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권고 여부 검토 및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도매시장 관리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여 추가 비용은 제한적임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 목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를 통한 도매시장 공익 강화
편익항목	유통구조 개선 및 정책효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위탁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유통비용 절감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 취소 기준														
	2.규제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														
	3.위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6.25.~2026.07.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승인) 취소 의무화 규정 신설에 따라, 취소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7.규제내용	○ 지정(승인)기간 내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 등 지정 취소 －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 기준 평가 결과 반영 기간을 ‘최근 5년’ 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 으로 변경 * 재지정 시 기존 부진 등급 부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도매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안) ① ‘27년 이후 5년 단위로 설정, ② 해당 시장 법인 지정 기간과 일치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시장도매인</td><td>110개소(‘25년 기준) 68개소(‘25년 기준)</td></tr><tr><td>이해관계자</td><td>출하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중도매인 등</td><td>-</td></tr><tr><td>관련기관</td><td>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시장도매인	110개소(‘25년 기준) 68개소(‘25년 기준)	이해관계자	출하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중도매인 등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 등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시장도매인	110개소(‘25년 기준) 68개소(‘25년 기준)													
이해관계자	출하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중도매인 등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 등	-														
9.규제목표	○ 도매시장 운영의 책임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통 주체 경쟁 촉진 －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유통 주체에 대한 퇴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정성분석)	○ 피규제기업: 운영주체는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운영실적 평가는 현행 제도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 작성이나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추가 비용은 기존 경영관리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수준임. 반복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운영주체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정부: 지정취소 여부 확인, 청문 및 후속 운영주체 선정 과정에														

		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실적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은 제한적임.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운영주체의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촉진될 수 있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시장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u>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u>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u>취소할 수 있다</u> .	②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u> ----- ----- <u>취소하여야 한다</u> .
<신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부진”이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운영 실적 평가 평가 등급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④ 그 밖에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u>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실적 평가제도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부진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여부를 개설자 또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 결과의 실효성이 낮고 제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상위법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부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법령명	조문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2. 27.>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 정부개입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주체로서 지속적인 운영성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부진한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더라도 제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운영실적 평가등급 하위 10%를 부진으로 정의하고 반복적인 부진 평가 시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운영주체의 책임성과 경영개선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부진 평가기관 지정취소 규정 현행 유지
	내용	운영실적 평가등급 하위 10%를 부진으로 정의하고 반복적인 부진 평가 시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할 수 있다로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부진 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준 마련
	내용	운영실적 평가등급 하위 10%를 부진으로 정의하고 반복적인 부진 평가 시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의무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지정취소에 따른 거래 중단, 고용승계 불필요 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상위법 개정 취지에 어긋남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출하자 보호라는 제도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규제대안1	- 운영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 운영기관의 책임성 및 성과관리 강화	- 지정취소 시 법인 임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경영상 부담 증가 - 신규 지정 절차에 따른 일부 행정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의견 없음

③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 내용)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선택근거1) 상위법에서 의무취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
- (선택근거2) 평가등급 하위 10%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의 예측가능성 확보하고 도매시장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제고

3. 규제목표

-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유통 주체에 대한 퇴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도매시장 운영의 책임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통 주체 경쟁 촉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비례적 타당성 충족

- 본 규제는 단순히 일회성 부진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또한 부진 기준을 운영실적 평가등급 하위 10%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함
-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 및 출하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비례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 조화 여부와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관련 산업의 사업자 수 또는 범위, 경쟁능력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정보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부진 등급이 연속 2회, 지정기간 내 3회 발생할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기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운영
② 규제 방식		지정취소 · 승인취소 기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본 규제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취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가 아니라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임 규제 적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규제의 효과 또한 거래질서 확립, 출하자 권익 보호, 도매시장 운영의 공정성 제고 등 비계량적 요소가 주된 내용임 또한 규제 대상인 도매시장법인의 수가 제한적이고 기업 규모별 규제비용 차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량적 분석보다는 규제의 특성과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④ 대상 업종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
⑤ 예비분석내용		○ 운영실적 평가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규제 적용 여부는 기업 규모가 아닌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됨 ○ 지정취소는 반복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기존 평가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행정부담은 크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적용 여부가 기업 규모가 아닌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규모별 차등화 적용의 실익이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	-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운영실적 부진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승인) 취소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피규제기업: 운영주체는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운영실적 평가는 현행 제도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 작성이나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추가 비용은 기존 경영관리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수준임. 반복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운영주체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정부: 지정취소 여부 확인, 청문 및 후속 운영주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실적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은 제한적임.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운영주체의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촉진될 수 있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시장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운영실적 평가 기준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용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운영실적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 구축이 필요 없고 부진 기준이 하위 10%로 명확하여 집행상 혼란이 적음
- 또한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현행 평가체계 내에서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기존의 관리·감독 체계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운영되므로 추가적인 인력 확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본 규제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6.5.4~5.14) 등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지정취소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 변화 및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검토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	지정취소 기준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체계 적정성 검토	27년 12월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반복적으로 부진 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의 퇴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객관적인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예측가능성이 높고 기존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집행 가능성도 충분함
-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및 유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이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해당 없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	-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운영실적 부진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승인) 취소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피규제기업: 운영주체는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운영실적 평가는 현행 제도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 작성이나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추가 비용은 기존 경영관리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수준임. 반복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운영주체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정부: 지정취소 여부 확인, 청문 및 후속 운영주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실적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은 제한적임.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운영주체의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촉진될 수 있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시장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운영실적 부진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승인) 취소 의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지정취소 대상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공판장
활동제목	운영실적 관리 및 지정취소 위험 대응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운영주체는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운영실적 평가는 현행 제도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 작성이나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추가 비용은 기존 경영관리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수준임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공판장
활동제목	운영 효율성 제고
편익항목	경영개선 유인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운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운영주체의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촉진될 수 있음 -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시장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② 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활동제목	지정취소 절차 운영
편익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지정취소 여부 확인, 청문 및 후속 운영주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운영실적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은 제한적임.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활동제 목	지정취소 절차 운영
편익항목	유통구조 개선 및 정책효율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반복적으로 부진한 운영주체에 대한 퇴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영실적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부실 운영주체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